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교육자료

일시: 2014.11.25(화) 16:00

장소: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폐기물 및 비산먼지 법규 해설

(사)한국건설환경협회 고문 **김 진 호**





친환경은 기업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다!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폐기물 및 비산면지 법규 해설

2014. 11. 25



(사)한국건설환경협회 고문 김진호

Contents

I 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폐기물관련 법규

Ⅱ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비산먼지관련 법규





제 I 장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관련 법규

2

■ 1. 폐기물관련 법규

법규	규제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1. 사업장폐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 지정폐기물, 3. 생활폐기물, 4.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5. 감염성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건설폐기물	

■ 2. 용어 정의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다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님 다른 용도로 재활용 시에는 관계기관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함

4

■ 2. 용어 정의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재활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①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②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2. 용어 정의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 3.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3.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종류 및 구분 체계

구분		세부 관련 기준		
사 업 장	건설폐기물 (18종)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 16가지 폐기물 + 16가지의 혼합폐기물 + 기타 폐기물		
폐 기 사업장 일반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톤이상 임목폐기물)		
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인체에 유해를 주는 유해한 물질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등)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8

■ 3. 폐기물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공사종류	세부 내용
토목공사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복구공사 등
도로공사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 2.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3. 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분류 - 18종

분류	종류			
가연성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기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10

■ 3. 폐기물의 종류

건설 폐기물의 종류

	종 류	세 부 내 용
	폐콘크리트	·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된 것 제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포장재 제외
	폐벽돌	◦ 내화벽돌은 제외
건	폐블록	◦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 또는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
설 폐	폐기와	◦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
재류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 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오염 토양은 제외 •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자갈.흙.모래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 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 연약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 슬라임 •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 해저준설토) • 토사와 오니가 섞여 토사상태로 배출되는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 건설오니가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 탈수처리된 오니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것은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 3. 폐기물의 종류

건설 폐기물의 종류

종 류	세 부 내 용
폐금속류	◦ 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
폐타일 및 폐도자기	◦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타일마감재 또는 도기류 등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보드형태)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텍스 등은 제외
폐판넬	°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 포함
	◦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방부제, 기름 오염된 것 제외) ◦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제외함
그 밖의 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타이어, 폐고무 등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비닐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단 석면함유물질 제외)
폐벽지	o 폐종이류, 벽지류 등

12

■ 3. 폐기물의 종류

건설 폐기물의 종류

종 류 세 부 내 용
구분 불연성 가연성 기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폐병돌, 폐블록, 폐기와, 폐타일 및 폐섬유, 폐병지 폐판넬 ② 불연성에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건설폐재류(95%)] + [(가연성폐기물 + 기타)(5%)] ②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과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기타폐기물(95%) + 가연성폐기물(5%)

■ 4. 건설폐기물 관련자의 의무

발주자

-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배출자

-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처리업자 (수집운반업자 · 중간처리자)

- ①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4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 예외

-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같은 법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 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 예외

-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16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 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

-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건물 등의 철거·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8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 마.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 분리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중 간처리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입도(粒度)가 40밀리미터 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아. 건설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다.
- 자. 건설폐기물 중 분리 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수집·운반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 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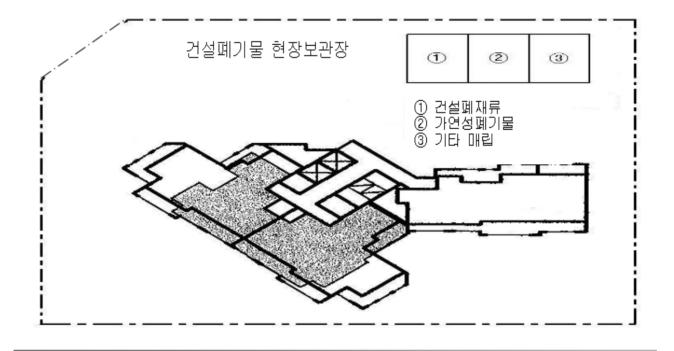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보관

- 가.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다음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장 설치 예



22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보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m²)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0				
0				
⑧운반예정장소				

-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 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중간처리

- 가.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

24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중간처리

- 라.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당시부터 나목과 다목 괄호안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 제4조제3호가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 마.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건설오니(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만 해당한다)가 발생 당시부터 본문의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향후 시행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2016.7.1 시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 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26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2016.7.1 시행

- 1. 강화플라스틱 재질
-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 3. 탄소석유 재질
-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비산먼지 발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 토사 운반 덤프트럭

28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 운반 · 보관 · 처리 시 비산먼지 관리 강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설폐기물로 인한 먼지, 확 줄인다

- ◇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 비산먼지 관리 강화
 -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에 금속 등으로 덮개 설치 의무화
 - 주거지역 인근(1km 이내)의 보관·처리시설에 방진벽·덮개·살수시설 필수 설치
- ◇ 그 외 건설폐토석 이물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폐법」하위법령 개정 2013.12.13일 시행

개정안에 따른 차량 구조 변경(2016 .7.1부 시행)



⇉





2016.. 7. 1. 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함.

건설폐기물 운반 · 보관 · 처리 시 비산먼지 관리 강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진벽 및 방진덮개 설치



방진벽 설치 및 바닥 포장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처리공정 살수시설



처리공정 덮개시설

30

■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분류	종류		처 리 방 법
가연성	폐목재		◦ 재활용 가능 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방부제, 유류에 오염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120	폐합성수지 폐선으		◦ 재활용 가능 시 - 폐관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재활용 불가능 시 - 폐관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위탁
불연성	건설 폐재류	페아스곤 페병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재활용
	건	ᄭᅜᄓ	재활용 가능 시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처리 후 재활용재활용 불가능 시 -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 건조 후 허가받은 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류 폐금속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건폐법 또는 폐관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 불가능 시 매립처리